

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3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0.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 · 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11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4조”로, “대전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법 제140조의2제6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제6항”으로, “위원회”를 “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를 “「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4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4조 ----- 대전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당연직 위원) 법 제14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<u>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·경제과학국장·자치행정국장·환경녹지국장·교통국장 및 도시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당연직 위원) 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제6항-----대전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</p>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49조 (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)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중앙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와 시·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지방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시·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2. 시·도를 달리하는 시·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3.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4. 시·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5. 시·도를 달리하는 시·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6. 시·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
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·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·의결한다.

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1.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
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
3.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50조 (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)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94조 (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지방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 관하여는 제87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준용한다.

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